



: 2017-11-21

서울 행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10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세 합계 1,156,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13. 1. 28. 렉스턴 7인승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B의 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D은 2013. 2. 2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3. 5. 3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606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2016. 5. 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 2016.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별지1 목록 순번 6 기재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청구의 적법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6.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소송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별지1 목록 순번 6 기재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B과 10살 때 헤어져 소식도 모르고 살았고 B의 사망사실을 알고는 그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상속을 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망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및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승인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될 뿐이다(민법 제1005조, 1028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B의 사망 당시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망시점에 B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가장 연장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B의 상속채무변제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그칠 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017-11-21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 2017-11-21

별지1

목 록

(단위: 원)

순번	구 분	부과일자	과세기간	본세	지방 교육세	합계
1	2013년 1기분	2013.7.10.	2013.01.01. ~2013.06.30	161,760	48,520	210,280
2	2013년 2기분	2013.11.22.	2013.07.01. ~2013.12.31	161,760	48,520	210,280
3	2014년 1기분	2014.7.10.	2014.01.01. ~2014.06.30	148,280	44,480	192,760
4	2014년 2기분	2015.1.10.	2014.07.01. ~2014.12.31	148,280	44,480	192,760
5	2015년 1기분	2015.7.10.	2015.01.01. ~2015.06.30	134,800	40,440	175,240
6	2015년 2기분	2016.1.10. ¹⁾	2015.07.01. ~2015.12.31	134,800	40,440	175,240
	합 계			889,680	266,880	1,156,560

<끝>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 4. 27.자 청구취지정정서 기재 2016. 5. 10.은 오기로 보인다.



: 2017-11-2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



: 2017-11-21

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 2017-11-21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끝>